

## 【 6 】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07. 8. .
		제 출 자	양 주 시 장

### □ 개정 이유

1. 기존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국제화추진 협의회조례」는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으로 조례를 따로 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관한 조례」로 전문을 개정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 등 교류 일반에 관한 내용 및 교류 업무 관련 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려는 것임.
2.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모법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및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거하여 제정 및 운영되어 왔으나, 「세계화추진 위원회규정」이 1998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5776호로 폐지되었고,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도 1999년 4월 12일 경기도 조례 제2901호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임.
3. 또한, 이미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국제화가 이뤄진 현 시점에서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짐. 따라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폐지하고 “국내·외 교류 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을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2. 결연의 범위를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으로 넓힘 (안 제4조).
3. 결연 체결과 취소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10조제3항).
4. 민간 교류 또는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5.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국내·외 교류 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둠 (안 제12조).
6.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을 국내·외 교류 업무를 포괄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7.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인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과 간사 및 서기를 명시함 (안 제14조).
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9. 협의회 위원의 해촉 조건을 명시함 (안 제16조).
10. 국외 거주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함 (안 제22조).
11.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양주시 국내·외 교류 협의회」로 하여 승계함 (안 부칙 제2항).
12.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함 (안 부칙 제3항)

- 신구 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개정 조례안: 불임
- 관계 법령 발췌서:
1. 기존 조례: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불임 2]
  2. 기존 조례: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불임 3]
- 관계 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 사항: 기존 예산에서 추가되는 사항 없음.
- 사전예고 결과: 2008.7.4~2008.7.23(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도시” 라 함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2. “국외 도시” 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3. “교류” 라 함은 국내·외 도시와 제도·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문화·경제·교육·환경·기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제2장 교류 및 결연

**제4조(결연 체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결연 원칙)** 결연 대상 도시는 양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결연 전 검토) ①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 받았을 때에는 해당 도시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수집에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기타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사전 교류 등)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결연 절차)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교류 지속 등) ①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민간 교류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민간 교류를 지원하거나 국외 교류 도시 또는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장 양주시 국내·외 교류 협의회

제12조(협의회의 설치)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국내·외 교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결연 대상 도시의 선정 및 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
3. 교류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류와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소속공무원, 시민, 기관·단체 및 기업 인사 또는 관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교류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총무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장으로 간사 1인과 교류 업무 담당 주사로 서기 1인을 둔다.

제15조(위원의 직무 및 임기)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관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직무를 위임받거나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책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원활 때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위원의 신상에 변화가 생겨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협의회 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 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협의회 회의 또는 제20조에 의한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자
2. 시장의 요청에 따라 교류 관련 활동이나 출장에 참여하는 자

제22조(국외 거주 위원의 위촉 등) ①시장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나, 국외 교류 도시나 관련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서 양주시의 교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국외 거주 위원은 제14조 제1항의 위원수 및 제17조 제3항의 회의 정족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3조(국외 거주 위원의 임무 등) ①국외 거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외 도시를 방문하는 양주시 대표단에 대한 지원
2. 국외 도시 및 관련 지역에 대한 양주시 홍보
3. 국제 교류와 관련된 해외 정보의 수집
4. 기타 양주시의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한 지원

②제1항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외 거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국외 거주 위원의 초청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외 거주 위원을 협의회 회의나 교류와 관련된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초청되는 국외 거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규정) 양주시 산하 읍·면·동의 교류는 본 조례를 준용하되, 결연 대상 지역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결연의 체결 및 취소에 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며,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양주시 국내·외 교류 협의회」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기존 조례(1)

##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21호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3] 관계 법령 발췌서: 기존 조례(2)

##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0. 1 조례 제3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국내·외 도시(이하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등 국내 및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의 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도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2. “국외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동일한 외국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결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 도시간의 행정·사회·문화·관광·체육·경제·교육·기타의 교류 등 상호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결연원칙)** 제4조의 결연대상 도시는 양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①시장은 타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양주시가 타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제7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의견수렴 및 동의)** 결연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도시와의 결연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결연절차 등) 결연은 양 도시간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시장은 결연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 체결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③결연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단, 국내도시간의 결연 취소 경우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읍·면·동과 타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본 조례를 준용하되, 교류대상지역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자매결연 체결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